

제429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0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6)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상정된 안건**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 2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 2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 2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6) ..... 2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 2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 2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 2

(11시05분 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심의를 하고 안건 종료가 되면 종합적으로 함께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셔야,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 발언하실 때는 소속과 직위,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6)
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11시07분)

○**소위원장 박수영** 의사일정 제1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는 지금 11시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먼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사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소위 자료 1페이지 관세사법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대리에 관한 관세사의 업무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리를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관세법 제118조 및 제126조에 따르면 관세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사의 직무의 하나로 현재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는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조문은 정부안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수용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한번……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차관님, 이렇게 하면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좀 명확하게 된다는 그것 하나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없으니까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일영 위원** 건수가 많아요? 과세전적부…… 이것 누구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작년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관세사 대리가 34건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대리한 게 10건 정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도 16건 있고요.

○**정일영 위원** 1년에요? 연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작년의 경우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많지는 않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세제실장입니다.

이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는 어떤 통지가 나간 다음에 사후적으로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 해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게 보통 절차인데 그 전에 과세기관이 사전적으로 통지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자면 조사를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세금이 얼마 나갈 것 같다 그러면 납세자한테 ‘선생님은 세금 얼마쯤 나올 것 같다’고 미리 통지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 이것은 너무 많다’는 식으로 과세 전에 이것을 한번 다뤄 보자, 한번 얘기를 해 보자 하는 게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정일영 위원** 관세청에 무슨 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민간위원까지 들어가 있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관세청이 어떤 조사를 나갔는데, 그래 가지고……

○**정일영 위원** 그것은 다 이해했고요. 나중에 청구를 하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거기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관세청에 구성돼 있는 심사위원회가 있고 민간위원들이 들어가 있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뜻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잠깐……

○**소위원장 박수영** 예,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천하람 위원** 지금 있는 심사청구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명시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게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어떤 실무상의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냥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관세법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정작 관세사의 업무를 정하는 관세

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명확하게 하자는 그 차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것을 안한다고 해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천하람 위원 입법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심사청구라는 문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현행법에도 이미 있고 실무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되고 있고, 관세사의 직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챌린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관님, 이것 정확하게 하는 게…… 아까 건수가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천하람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청구라는 단어 안에, 용어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이것도 심사청구니까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천하람 위원님 의견이신데……

그 실무자는 누구, 과장님이신가요? 관세청에서 오셨나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관세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관세정책관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아까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심사청구는 일단 과세가 되고 난 이후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관세청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이라 는 것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로 하여금 두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강화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법이나 관세법에서 다르게, 다른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전혀 다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심사청구라는 용어의 개념이, 과세 이후에 불복해서 심사청 구한다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학계에서……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법이랑 관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법하고 관세법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예, 별개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별개로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예.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천하람 위원 예, 실익이 있다면 저도 크게 이견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 부분은 구분해서 이렇게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혼란을 막고 또 관세 청 업무 진행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법령에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정일영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모든 위원님 동의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회의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일괄하여 변경하려

는 내용입니다. 관세사회의 등록 법인 명칭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회도 보면 한국세무사회 이렇게 다 ‘한국’이나 ‘대한’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붙이자는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한국이나 대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소위원장 박수영 변협 같으면 대한변협.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9페이지, 3번입니다. 관세사 등의 탈세 상담 등 금지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관세사나 사무직원이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방조·상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세법인 그리고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해서도 해당 의무를 준용하는 한편 관련 의무 위반 시에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관세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취지로 보여지며 참고로 세무사법에서도 관련 세무사 및 세무법인 등에 대해서 탈세 상담 등 금지 의무를 동일한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의견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세무사법에는 있지만 관세사법에 이게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세사나 사무직원의 가담·방조·상담 시에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일영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소위원장 박수영 예,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차관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조금 전에 이게 국세청, 일반 세법에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세무사법에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세무사법에?

○전문위원 정지은 참고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사법 규정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현실적으로 탈세와 절세가 정확히 구분이 됩니까? 궁

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현실적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에 가 가지고 그게 탈세로 판단이 되면 탈세일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 의견은 없고요.

지금 탈세하고 절세가 구분이 명확히 안 된다라고 실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관세 업무 하다 보면 이것 명확히 구분합니다. 구분이 되고요, 규정도 있고 그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관한 벌칙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은 다음부터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

최기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기상 위원** 변호사법에도 이런 유사한 조항이 있나요, 변호사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변호사법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탈세 상담 자체는 사실 세무사와 관세사의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변호사법에 불법적으로 뭘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그 조항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내용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다른 직역에 없는 내용이 이렇게 계속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쪽 직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속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통 일반적으로 변호사법에 변호사들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조항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세무사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앞으로도 이렇게 유사 법령인 세무사, 관세사 이게 있으면 비슷한 조항들은 같이 맞춰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법률의 통일성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체크해 보시고. 이런 조항이 세무사법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서야 관세사법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변호사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위법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추론해 보더라도 유사한 업역에서는 공적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이 또 변호사시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이렇게 읊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이것 반대는 아니시지요?

○**최기상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13페이지, 4번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서 공공기관에서 위촉 또는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자문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 현황 및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을 광의로 해석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자문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관세사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세무사법의 경우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공기관이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비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같은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라는 조항을 확대해석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위촉을 받아서 자문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고 국가는 국가니까 2개를 다 넣어 가지고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요.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곧 개정하게 될 텐데 세무사법하고 관세사법하고 지금 보시면 규정의 양식이 달라요, 같은 조항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세무사법에는 이미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사법에는 이게 안 돼 가지고……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관세사법하고 세무사법이 같은 규정 양식으로, 형태로 바꾸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무사법 개정안에,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 업무로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명백하게 모든 조문이 똑같은 건 아니고 14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세무사법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이라고……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요. 제 질문은 세무사법 16조 3호의 규정 양식하고 지금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관세사법의 양식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취지는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장 박수영 취지는 같은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취지는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체계가 조금 다른……

○소위원장 박수영 다르다는 거지요. 자구가 달라요. 그것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나중에 세무사법 개정안 할 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맞추는데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사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실 구조상으로는 지금 현재 관세사법 개정안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세무사법하고 유사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약칭 이외 조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양쪽을 맞춰 가지고 이것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위원 정지은 그게 현재 개정안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3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서가 앞에, 개정안 내용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위원장 박수영 앞에 요약본을 잘못 썼군요, 전문위원님이. 뒤에 개정안은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좀 혼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 좀 다른 주제인데요, 이것 여기서 같이 논의해서 수정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들 변호사 겸직하면 안 됩니다. 휴업해야 됩니다. 저도 휴업이고 한데, 어쨌든 국회의원은 지방 의원과는 일률적으로 좀 달리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국회의원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사 업무를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허가를 금지하는 게 다른 제도와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법안 발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결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검토 좀 같이 해서, 이것 누락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확실한지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전문위원이 더블 체크를 해 봐야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소영 위원 그런데 변호사법 38조(겸직 제한)에 똑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것은 겸직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겸직 제한 적용이 안 돼요?

○천하람 위원 됩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하람 위원 천하람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국회법하고 충돌하는 것 같거든요. 국회법 29조 1항에서 이런 전문자격사들 겸직을 다 막으면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오기형 위원님,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많은 의원님들 다 휴업하고—저 포함—계시기 때문에 지금 관세사법이나 변호사법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면 이것은 국회법 개정 이후에 해당 개별 법률들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관세사법을 어차피 개정한다면 국회법에 맞춰서 국회의원 부분을 삭제하고 하는 게 맞고 변호사법도 차제에 개정할 때는 그런 식으로 바로잡는 게 오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세무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소위원장 박수영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관세사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겸직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은 준비나 도전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다른 업무를 동시에…… 충실 의무, 전념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휴업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겸직 제한을 받는 것하고는 양 측면이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세사법이나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 이것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는 것도 동일하게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박수영 예,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저도 방금 이소영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이걸 또 완전히 금지하면 휴업회원이나 이런 형태로 실제 직무를 안 하면서 어쨌든 자격을 보유하고 갖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복잡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오기형 위원 한번 정부 검토를 따라 보시지요, 이번에.

○천하람 위원 예, 이번 기회에 정부 쪽에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국회법 29조와의 충돌 문제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정일영 위원 아니요, 다른 거예요.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내용이면 잠깐만요, 이것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변호사님이 세 분, 네 분 계시기 때문에 각 이의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정부 측과 전문위원이 국회법과의 충돌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서 국회의원 겸직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관세사법이나 세무사법 개정할 때에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다른 의견, 다른 내용이시지요?

○정일영 위원 아닙니다. 아니, 그 건은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 찬성이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예.

○정일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차관님, 15조는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그런 조항이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21조의3은 ‘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길래요. 여기서 관세사회라는 게, 관세사가 아니고 관세사회로 돼 있잖아요? 관세사회라는 게 그러면 뭐예요? 아까 얘기한 한국관세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아까 단체.

○정일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촉을 하면 거기서 그 기관이 위촉해서 한국관세사회,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봐야 되겠지, 본부 또 지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부에 여기다 위촉을 하면 거기서 한국관세사회의 이름으로 자문한다 그것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실제로 뭘 이렇게 자문하거나 이런 사례는 많지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관세정책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세사법 제21조의3에 공공기관은 관세사회에 위촉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면 관세사회가 그 위촉하거나 자문받은 경우에 회원으로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정일영 위원 회원이지요, 결국은 관세사?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예, 결국은 관세사가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확히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조문에 또 있군요, 그것 관련되는 사항이?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관세사회 주체는 아닙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관세사회라고 돼 있지만 한국관세사회로 바뀔 거고 그게 있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관세사한테 위촉·자문이 되는 거네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해결됐습니까?

○정일영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이 문제도 위원님들 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16페이지, 관세사 명의대여 등 관련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관세사의 명의대여 행위 그리고 명의를 빌리는 행위 그리고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얻은 불법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이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명의대여 등 범죄 동기를 억제하고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며 관련 자격사법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그리고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사법에도 명의대여 행위 등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안.....

○소위원장 박수영 설명도 좀 하시고, 동의는 하실 텐데 정부안이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게 왜 필요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별처 규정은 있는데 그로 인한 재산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금품을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한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 조항을 추가하자는 취지고요. 나중에 또 세무사법 논의할 때도 같은, 조항을 맞추는 조항이 같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같이 들어 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일영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중에 의결하기로 하고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19페이지, 6번 과태료 부과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 지침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위임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대령에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지침에서 대령으로 올린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7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법규상에 있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직무보조자는 사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전문자격사 관련 직무보조인을 사무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적절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도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관세사법 안에서도 사무보조자와 사무직원이 혼용돼 있는 점도 있고 해서 사무직원으로 다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것은 이게 어디서 바뀌었길래, 이런 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국제회의 기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각 법에서 수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용어가 바뀐 겁니까, 재무제표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소위원장 박수영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뀐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유상범 위원 이게 일본식 용어를, 기존 일본식 용어라고 그래서 그것을 변경한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본회의 하면 이것 계속 올라오더라고.

○유상범 위원 많이 올라옵니다.

○박성훈 위원 한꺼번에 다 같이 바꿨어야 되는데.....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 법안으로 올라오면 안 되고 그냥 일괄해서 정부에서 바꾸면 되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네요, 하나씩.

○소위원장 박수영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바꾸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관세사법은 별다른 쟁점 없이 잘 진행이 됐는데 혹시나 나중에 오해할, 세무사법하고 연관되는 조항이 또 있을까 봐 지금 의결하지 아니하고 세무사법 논의한 다음에 함께,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본 다음에 함께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사법을 들어갔다가는 정회하는 시간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맨마지막 것을 먼저 해서 마무리를 짓고 정회를 잠시 했다가 세무사법을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5쪽에 파산선고에 관한 안건이 있는데 전문위원님, 105쪽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105페이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의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106페이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관세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와 관세법 및 세무사법에 따른 관세사 및 세무사의 결격사유 그리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면허 제한 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도한 직업선택의자유 제한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는 조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공공적 책무의 중요성이나 그 전문성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현재 세무사법·관세사법에서는 자격시험 응시 결격요건에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복권 이후에 세무사·관세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수정의견은 다음 108페이지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시험 응시는 하게 하고 등록해서 업무하는 것은 복권된 다음에 하게 하고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네요.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 측도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 관세사 업무가 하는 게 예를 들면 보세구역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적 책임이 좀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파산됐다가 복권되지 아니했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파산하고 나서 빚을 탕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더 이상 갚을 수 없을 때 면책을 다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면책을 해 주면 당연히 복권이 되는데 복권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죄가 더 추가된 경우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성실하게 이야기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복권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분들은 아직도 빚이 남아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납세의무와 관련된 것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혹시나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저희가 허용할 수 없고요. 다만 자격시험을 치는 것까지 막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변호사법에도 보면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결격요건이.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자격시험을 치는 것은 저희는 허용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변호사님들이 또 다섯 분이나 여기 계신데 혹시 자격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박홍근 의원님 안이나 준비하신 안이나 충분히 선택 가능한 범위라고 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전부터 이 논의가 나온 배경에 대

해서 정부에서 함께 종합 정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파산선고 이후에 사회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파산 관련된 자격 제한이 대한민국 법 곳곳에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잔재거든요. 일본에서 파산에 대해서 독특하게 이용했던 것을 이 법 저 법 만들 때마다 그냥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당한 것 자체가 범죄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우리 사회는, 제가 가계부채 하다 보니까 계속 논쟁이 되는데 일정 정도 시기가 되면 정상 회복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많이 흔적이 쌓여 있어서 개별 법마다 이런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이삼 년 전부터.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기재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파산 관련된 부분 정부 차원에서 정리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수준까지는 파산 관련해서 제재 내지는 제약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일률적으로, 경제적인 것은 확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A안이든 B안이든 둘 다 선택 가능한 영역인 거고 지금 충분히 유연하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건 한 건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종합적인 정돈된 안을 준비했다가 국회에다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유상범 위원님, 이것은 법무부 일 아닌가요, 기재부 일인가요?

○**유상범 위원** 예, 이것은 기재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소위원장 박수영**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기본적으로 파산과 관련된 것은 법무부에서 총괄하는 분야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재부에서는 외려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가 보면 세무사·관세사, 이것은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에게, 어떤 파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기재부랑 법무부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파산선고 복권 안 된 사람을 어디까지 우리가 혜용할 것인가를 한번 기관 간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관련 법이 수백 개 있을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이것 아시다시피 본회의에 또 엄청나게 많이 개별 법으로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는 우리가 파산제도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산제도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회적 제재로 내보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응시 자격에서 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아니라 파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유예기간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다음에 등록을 하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지금으로서의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는 정부 측에서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제시를 했고 정부 측도 좋다고 그러니까 수정안에 저는 찬성이고요.

다만 이게 법무부나 법사위와 관련되는 것에 대한 약간 질의와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점심시간에 정회할 때 확인을 하셔서 오후에 확인한 다음에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아니, 우리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 가능하고요. 군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법에 다 걸려 있는 파산제도 전체의, 개별 법안이 본회의에 계속 올라오니까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법무부가 의논해서 정부가 일괄 정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또는 정책을 만들어 보라는 의미였고요. 우리 법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우리는 이걸 처리하는 게 우리 소위의 그거니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당연히 파산선고 받고 이후에 사회 복귀가 돼야 되고 모든 직업 활동을 막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저도 세무사, 관세사 같은 경우에 받아들인다면 수정안 정도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별개로 어쨌든 면허를 받거나 특허를 받은 경우는 일반적인 영리활동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름의 다 공익상 어떤 목적이 있거나 그래서 제한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특허보세구역 운영인하고 주류 면허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의견이 지금 모르겠는데 정부 측 입장은 이 2개는 수용해도 된다라는 입장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도 경제적인 책임이 많이 따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복권되지 않은 자에게는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특허보세구역 운영이나 특히 우리 사회가 사실 주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기는 하지만 주류 면허 이런 부분도 복권되기 전에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저도 좀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박홍근 의원님 안은 다 허용해 주자고 하는 건데 지금 전문위원 수정안 냈고 차관님이 그 수정안에도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박홍근 의원님 안에서 정리가 짹 다 된 겁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주류 면허 이런 것은 빠져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4개 법 관련 결격사유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그리고 주류면허법에 따른 면허 제한 사유와 관련해서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이 박홍근 의원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공적 책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관세사와 세무사의 응시 자격만 허용을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좀 더 침언을 드리면요.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주류 면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분들이 주류 제조면허를 갖고 있을 때 주세에 대한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권되지 않았다는 것은 잔여 채무를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보세 같은 경우에도 보세를 운영하고 있다가 보세 화물의 멸실, 폐기, 도난 이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국내 유통이 됐다고 추정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면세를 안 하고. 이것을 이분들이 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그걸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금도 요건이 있고 인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파산하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도 함께 있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그러면 박홍근 의원안을 채택을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고 대안……

○소위원장 박수영 수정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대안으로 가는데 특허보세구역 관세법하고 주류면허법 이것은 채택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2개, 관세사법과 세무사법은 채택을 하되 대안으로 시험은 응시할 수 있고 등록 관세사 작업할 때는 복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요.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지요? 복권되면 준다는 게, 경제활동을 사실은 복권되기까지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이 면허에 대해서, 주류 면허도 그렇고 관세사도 그렇고. 이 개정안의 의미가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빨리 사회에 복귀하고 경제활동인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제도에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복권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경제적 활동을 해야 복권을 하는 건데 아예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측면을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측면이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 다 마무리하셨으면 제가 답변드려도……

○김영환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파산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확정하고 나면 그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데 면책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다 하도록 법원에 의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기죄나 속이거나 허위의 진술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책을 하게 돼 있고요. 면책을 하게 되면 다음 조문에서 바로 복권이 됩니다. 당연복권입니다. 그러니까 면책과 복권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 통계를 보면 2023년의 경우에 면책신청을 접수한 게 3만 9000건인데요 그중에 3만 6800건이 다 인용이 됐습니다. 하여튼 거의 다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엔간한 죄가 아니면. 그렇다는 것은 복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고민이 된다는 거고 특히나 공익적……

○김영환 위원 예, 좋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양해되셨습니까?

○김영환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공부를 많이 해 오셨네.

○유상범 위원 그 통계는 그 법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그러면 양해하신 걸로, 그러면 모든 위원님 다 이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예, 통계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정일영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박수영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정일영 위원 세무사법이 의사일정에도 제일 먼저 올라와 있고 밖에 세무사회에서 많이 와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고 한데 이것 제안설명, 검토의견이라도 한번 듣고 정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조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일영 위원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예, 조문이 많아요. 많아서 한 건 한 건 하다 보면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면……

○정일영 위원 보고도 안 받고……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보고라는 게 조문별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10시에 시작했으면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대표연설 때 문에 11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발의한 두 분 의원도 있는데……

○소위원장 박수영 물론이지요. 여러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26쪽부터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 소위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1번 세무사의 직무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 중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 업무가 있는데 이 부담금 전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 업무로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업무 중 조세에 관한 신고 외에 공시를 위하여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 직무를 신설하는 한편 진단에 관한 업무도 고유 업무로 추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이 법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편 현행 규정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를 세무대리로 약칭을 하고 있는데 직무범위가 확대될 경우 세무사의 직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세무사가 준조세적 성격이 있는 부담금 전반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청구를 대리하게 함으로써 부담금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조세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과정에서 재무제표 등을 현재 작성하고 있고 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재무관리 상태 등의 기업진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로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검토의견 28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2조는 세무사의 고유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0조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과 그리고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는 현재 다른 직역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고 기업진단 업무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세무사의 고유 직무로 명시하는 것은 자격사 업역 간의 충돌 문제라든지 관련 법 규정과의 상충 소지 등을 감안해서 관련 직역 단체의 의견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목조목.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빌의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관련된 내용을 볼 때 기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은 고유 업무에 대한 규정이고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기에 명시가 되면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보통 다른 전문자격사에도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어떤 것이 추가될 때 그로 인해서 다른 자격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 여기가 추가되면 세무사의 고유 업무로 됨으로써 세무사 자격증 없이 일을 했을 때는 탈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사 외에는 대부분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세무사의 고유 업무 확대가 과도하게 되었을 경우에 직역의 성격이 불분명해지거나 다른 자격사 법률과의 충돌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칭의 경우에도 사실 저희도 보면 세무대리라는 이름으로 여기 있는 9호를, 아홉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만약에 약칭을 뺐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합의가 있어서 다른 직역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여기서 신중하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전문위원님이 3개, 4개 정도로 주요 내용을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이것을 부담금 전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확대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정부 측 반대의견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사가 할 수 있는 부담금 관련돼서 행정심판 대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제도의 연혁이 있습니다. 애초 90년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부담금이 도입될 때 처음에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게 원래 조세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세로 하지는 않고 부담금으로 하되 어떤 부과 체계나 나중에 이런 문제, 환급이나 이런 것들을 조세 관련 규정을 당시에 많이 따릅니다라고 해 가지고, 국세기본법이나 이런 조항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것은 조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대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부담금에 관련된 법률이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한 9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세에 관한 성격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담금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장애인고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을 안 하면 기업에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조세의 성격하고 유사한 것인가에는, 그 부담금이 너무 종류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공시하고 관련돼서 여기서……

○소위원장 박수영 공시하고 진단 들어 있는 두 번째 쟁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라는 것은 통칭 보면 이것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재무제표를,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통 공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과연 납세자 어떤 개인을 위해서 대리를 하는 세무사의 업무가 공시하고 맞느냐 이런 공인회계사 쪽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진단 같은 경우에도, 진단이라는 게 어떤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이게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용어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회계사의 업무냐. 또는 경영지도사라고 해서 별도의 이런 업역을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세무사분들이 하는 것하고 또 충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세무사법이 아니고 어떤 다

른 법에 따라서 세무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별 법의 판단에 따라서 거기에서 규정을 해서 이건 세무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개별 법에 따라서 하는 것 말고 그런 것을 다 세무사의 업무로 여기다가 적시를 하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느냐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차관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라고 조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업무를 추가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세무사 업계에서 혹시나 이건 우리의 고유 업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다른 법에서 허용하는 것하고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네 번째 쟁점은 세무대리라고 하는 약칭, 이것을 꼭 세무대리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또 전문위원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까 차관도 얘기했지만 현행 세무사의 업무가 아홉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무대리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행 세무대리라는 용어가 세무사의 업무를 다 포괄하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아닌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세무대리라는 말을 다른 법에서도, 물론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라고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무대리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할 수도 있고 세무대리를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쓰는 세무대리와 이 법에서 쓰는,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어떤 용어를 또 변경한다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약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현행 세무대리라는 용어 자체가 세무사가 하는 모든 업무를 포괄하지 않는 측면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의견 들을 기회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세무사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소위원장 박수영 혹시 회계사 자격증도 있습니까?

○최은석 위원 예, 회계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우리 위원회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많네. 아까 변호사 5명 있더니 이제는……

○최은석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세무사와 회계사 자격증 둘 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 약간 균형 잡힌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 잠깐만요. 전체적인 말씀은 간단하게 하시고 1·2·3·4로 우리가 4개를 쪼개 놨기 때문에 쟁점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예.

그러면 먼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실은 차관님이나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약간 연혁이 있는 걸로, 예전에 아주 예외적으로 부담금과 관련된 것들이 좀 진행이 되

었고 그런 부분들은 조세와 관련된 성격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대로 1개 정도는 아마 예외적으로 세무사의 업무 범위로 파악됐던 거고, 나머지 부담금으로 확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건 세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담금으로 확대하는 것들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시와 관련해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는 재산이나 경영 상태 또는 증권 이런 데 대해서 중요한, 어떤 기업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제삼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와 관련된 것들은 실은 세무사의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와 관련된 것들의 장부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들은 세무사의 기본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고 어떻게 보면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을 세무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진단이라는 것도 실은 진단에 대한 명확한 의미는 없지만 ‘진단’ 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이 느낄 때는 제삼자가 볼 때 어떤 사안이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진단에 대한 것들도 본래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대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것들도 다른 업무 영역들하고 너무 충돌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네 번째가 세무대리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예, 네 번째가 세무대리입니다.

**○최은석 위원** 세무대리가 지금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9개의 업무를 세무대리 업무로 규정하는데 6번 말고는 전부 다 조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무사법은 지금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세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전제를 가지고 세무사의 업무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6번의 개별공시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 아마 여러 가지 조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들일 수가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세무대리 업무를 지금 기본적으로 세무사들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제외하고 세무사의 업무를 더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업무에 있어서 많은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세무대리라고 하는 것들을 삭제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그런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쟁점이 4개나 되다 보니까 하나씩 하는 게 우리 의사결정하기에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이외에 부담금법에 의한 96개를 전부 다 포함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지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이 얘기된 거잖아요. 그런데 조세와 같이 떨려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액 기준으로 공공시설

수익자부담금, 도시개발법 비용부담금, 보안림 수익자부담금, 소하천 수익자부담금 이게 소득액 기준으로 떨려 오는 거거든요. 법인 수익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양곡 수입이익 부과금, 임산물 수입이익금 그다음에 거래액 기준 관련해서는 부담금이 많아요. 그리고 재산액 기준으로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개발부담금,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이처럼 이렇게 국세 혹은 재산세, 재산액·소득액·법인 수익 이렇게 연관된 부담금들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 최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세무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실무자로 하고 있잖아요, 다. 그 자격증을 놀리고 있는 것 같은데, 회계사만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위원장 박수영 기업 경영하시느라고 별로 안 해 보신 모양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실제 현장에서 다 수행하는 업무고요. 그래서 부담금을 이렇게 96종에 대해서 다 확대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면 조세에 떨려서 들어오는 것들은 세무사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장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익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인허가로 시장 질서에서 딱 막아 놓으면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쉽게 또 어떻게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세무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대 측면은 저는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 고유 업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유 업무라고 적시된 법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부차관님, 고유 업무가 뭐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직무입니다. 법규상 직무로 돼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냥 직무만 있지 고유 직무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실제 행하고 있는 것인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직무에 포함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요, 이 모법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고유 직무라는 건 솔직히 타 법에도 있고 세무대리도 회계사법에 있잖아요. 고유한 직무라고 표현하나요? 세무사도 하고 있잖아요. 고유한 직무는 아니지요. 그냥 그 영역에서 같이 경쟁하고 같이 수행하는 임무들을 하는 거지요. 고유라는 개념은 허가나 인허가 과정에서, 자격증 같은 경우 거기서 일정 부분 수행하는 업무 범위일 거예요. 그런데 수행하고 있는 것을 직무로 넣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그건 모순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유 직무라는 건 법에 없다,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있다면 이 안에 넣어 줘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시 관련된 얘기를 한 건 뭐냐 하면……

○소위원장 박수영 공시는 좀 이따 하십시오. 첫 번째 쟁점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영환 위원 그래요? 그럴게요. 부담금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또 다른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외와 원칙 그리고 일반론으로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무사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권은 사실 예외

적으로 인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예외가 일반이 되는 이런 보편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96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부담금을 보면 여기서 세무사가 개발부담금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대리권과 유사하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하면 그걸 빌라내서 접근하는 이런 시각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마 96건에 달하는 모든 개발부담금을 다 세무사가 행정심판청구 대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건 사실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보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원래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일반적인 이런 방식으로 업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세제실장님께서 연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 이 연혁대로 하자고 하면 원래 세무사가 대리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시간이 지나서 세무사가 모든 영역까지 다 대리를 하게 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게 일반적으로 바뀌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이건 부담금이잖아요. 부담금도 일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등을 둘 필요가 없는 거고 국민 편의 입장에서 하자는 거겠지요. 이게 꼭 업역의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 편의 면에서 봐야 되고.

또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예외로 인정해 줄 거냐라는 것은 그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융통성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96개에 대해서 모두 다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나름대로 세무사 이쪽에서도 새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 추가 항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명히 기준을 정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부담금이 그것에 부합하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결정을,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작업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아마 세무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몇 가지 9개, 10개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의 개발부담금과 사실상 유사합니다. 그런 예는 그 연장선상에서 일차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작업이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최근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 조세연구원에서 한번 연구용역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이건 조세와 성격이 유사하다라는 결과가 있었다는 걸 저희도 자료는 봤는데 이게 거의 이십몇 년이 지났고 그때의 그 분류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는 한번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심판청구에 대해서 다른 자격사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아마 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같은 경우에 행정사도 행정심판청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 가지고 그때도

한번 2016년도에 시도가 됐었는데……

○**안도걸 위원** 제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29종이래요. 29종 정도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 부담금은 이와 유사합니다.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업역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 그에 부합하다라고 했고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세제실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다 했겠지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조금 해 주세요. 그에 가지고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쪽에 보고를 해 주고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혹시 발언 안하신 위원님 중에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손 거수하신 거예요?

예.

○**천하람 위원** 글쎄요, 저도 연구용역 이런 내용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면 세금과 연관이 있다, 소득세 아니면 법인세 납부와 이게 연동이 된다 그런 식으로 개별부담금과의 연관관계를 찾으면 어지간한 건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도 근로하면 근로소득세 신고하고 모든 게 다……

세금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소득활동, 영리활동, 상당수의 사회적 활동과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이게 무제한 확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결국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의 문제인데 조세의 성격과 거의 똑같아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처럼 어떤 불복절차나 여기에 대해 따지는 게 거의 동일한 프로세스로 되어야 되는 정도냐, 저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담금들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세금과 연결되는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요. 제 느낌이 그렇고.

그다음에 차관님, 준조세라는 게 법률적으로나 이렇게 확립된 개념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부담금 등을 다 포괄하는……

○**천하람 위원** 그러면 부담금 중에 어떤 게 준조세적 성격이 있고 어떤 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뭔가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예외적으로 이건 거의 세금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넣어 놨는데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고리로 해서 다른 거를 더 추가한다? 저는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

결판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세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담금의 성격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사법 2조에 보면 고유 업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의 직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직무를 9개 걸쳐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개에 들어가면 직무가 되는 거고 안 들어가면 직무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고유 업무라고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다, 법률상으로.

두 번째로는 부담금의 성격에 관한 건데 세무사의 직무 2조 1호에 보면 ‘조세에 관한 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무사의 직무에서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호에 ‘조세에 관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끝에 괄호 열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부담금의 행정심판청구 대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무사의 직무라는 거는 어떻게 열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조세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조세적 성격이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취지로 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세무사의 직무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열거하느냐의 문제고 열거할 때 조세와 조세에 관한 성격이 있는 거는 세무사의 직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부담금이 9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가 조세의 성격이 있느냐 이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그런 성격은 있는데 아까 연구용역 결과도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부담금 전체를 준조세 성격으로 봐서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좁히면 그야말로 조세적 성격이 아주 강한 거는 해당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차관님,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신 걸 좀 더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직무와 고유 직무, 고유 업무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고유 업무라는 단어는 없어요. 2조에 직무가 9개가 나열이 되어 있고 이거를 배타적 고유 업무라고 하는 이유는 22조의 별칙 조항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이 9개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별칙을 받도록 22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이 못 한다, 그래서 고유 업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제가 파악한 바인데, 맞나요?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9개가 아니면 그러면 세무사가 일을 못 하느냐, 그게 아니고 타 법에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세무사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다만 그거는 고유 업무가 아니고 추가로 그 법에서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이 9개의 업무를 다른 직역에서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되잖아요, 세무사 자격증이 없으면. 그런 것이지요?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정태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29개든 9개든 몇 개든 간에 저쪽에서 부담금법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조세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가져온다면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변호사를 못하게 만드는 즉 고유 업무인 2조에 넣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변호사님들은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심판 대리인은 원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변호사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도, 다른 직역하고는 조금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다른 직역 어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자면 행정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 끊겼……

○**김영환 위원** 행정사는 법제처에서 이미 해석이 나왔잖아요,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못 하도록. 이미 법제처에서 해석이 끝난 얘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법제처,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시도하다가 그게 또 무산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법제처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하고 그렇게 충돌하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실장님, 22조에 세무대리 업무, 세무대리 즉 2조에서 규정한 세무대리는 세무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담금법에서 9개든 29개든 2조에 넣게 되면 그건 세무대리에 9개, 1호부터 9호까지 있는 거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세무대리 업무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세무대리 업무가 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쳐벌하라는 게 22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만약에 변호사는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변호사법과 세무사법에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법에 뭔가를 규정했을 때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직무라고 규정을 하고—고유 업무라는 용어는 없지만—또 다른 법에서 어떤 걸, 예를 들면 경영지도사든 변호사든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두 법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데 세무사법에 근거를 해서 예를 들자면 세무사협회에서 이거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인데 그쪽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그런 업역 충돌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1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현재 행정심판법에 보면 변호사 등은 행정심판을 대리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변호사는 그냥 행정심판을 다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는 갈등 관계는 없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런데 우리 법하고 갈등이 생기지요. 우리 법 22조를 보세요.

○박성훈 위원 세무사법에 보면 아예 세무대리와 관련해서 충돌되는 거는 변호사 업무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는 충돌하지 않고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아예 예외 조항을 법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세무사법에는. 그런데 세무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업역에 대해서는 이 범위를 넓힐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벌칙 조항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변호사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나머지 업역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의 적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케이.

○전문위원 정지은 말씀하신 부분은 28페이지 각주에 지금 규정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 단서에 보시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벌칙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일단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청구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변호사만 빼놓은 거네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여전히……

오기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기형 위원 가급적이면 이건 논의를 좀 지켜보려 그랬었는데, 제가 고민은 대한민국에서 각종 자격증이 너무 난무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직역 다툼으로 보여진다. 이게 되게 모양이 안 좋고 또 각 특별 직역별로 계속 직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철학과 관점을 좀 정리하고 같이 가야 된다. 물론 이게 합의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비판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쌓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정부 각 부처별로 막 어떤 자격증을 계속 양산해 냈지 않습니까. 또는 다른 걸 하면서 충돌이 되고. 그래서 사후에 수습하는 입법들을 계속 만들어 냈고 그 단체의 목소리가 크면 또 무조건 이걸 전달해야 되고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가 우리가 계속 좀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관된 기준을 계속 세우는 게 필요하고 하나 두 개 짧은 시간에 넣고 빼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논의하셨던 것만 보면 세무사의 성격은 세무서, 국세청과의 관계에서의 업무로서 확정이 되고 국세청이 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부담금이든 아니든. 이게 기본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부담금에 관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부담금, 아까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 그걸 넓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데 그렇다면 아까 처벌 문제는 다른 식으로 또 조항 보완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후에도, 그전에 다룬 회계사 논의할 때도 그랬지만 직역을 확대하는 것을 무조건 계속 하다 보면 더 큰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다른 식으로 직역을 계속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런 자격증을 계속…… 크게 보면 회계사랑 세무사랑만 단일로 통합을 하고 또는 다른 개별적인 라이선스를 좀 정리를 해 내는 그걸 해야지 때 할 때마다 이것 갖고 논쟁하는 것은 국회에서 서로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게 넓혔을 때 부담금과 관련해서 변호사하고 겹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변호사와는 업무가 중복이 되는 거고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청구에서 변호사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업무가 중복이 되는 거고 다른 자격사는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최은석 위원 저도 잠깐……

○소위원장 박수영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최은석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최은석 위원 저도 각 전문자격사의 직역에 대해서는 좀 전에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많이 공감이 되고 지금 각 전문자격사들이 업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확장하려는 시도보다는 기존에 본인들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중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각종 전문자격사의 법률들이 그때그때마다 업역을 다른 자격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자꾸 확장하려는 시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갈등만 자꾸 늘리고 자격사들 간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들로 자꾸 이렇게 확장돼서 되게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업무의 영역 확대 같은 것들은 진짜 좀 신중하게 다뤄지고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꾸 법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영환 위원 마지막……

○소위원장 박수영 마지막으로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여러 우려들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장에서 평가되는 시장가격입니다. 변호사 비용과 세무사 비용은 그 신뢰와 그 전문성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되지요. 그래서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효용감 거기에 따른 시장가격이 생기는 거고 세무사 업무에 따른 별도의 신뢰감 이거에 따라서 시장가격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를 수요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미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저변에 업역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느냐 이 편익의 문제로 저는 이 문제를 다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는 부담금 일체를 써 놨지만 기재부의 입장에서 준조세 그러니까 조세적 성격이 강한 것들 혹은 조세와 연동이 큰 것들을 좀 구분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일정 정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민들 편익을 생각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첫 번째 쟁점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근 30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각자의 의견에 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편익 또 싸게 할 수 있는 요금 문제 이런 것 감안하면 업역을 확대해도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자는 측면이 있고 또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하고 연관된다고 다 집어넣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개발부담금처럼 깊은 연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연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6개의 부담금 중에 어떤 게 어떤 성격을 갖는 건지에 대한 분석이 현재 없는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6개를 원한다고 해서 6개를 넣어 주고 또 29개가 조세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걸 넣고 하는 건 너무 좀 성급한 일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재부가 그 96개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서 과연 개발부담금하고 정말 밀접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기본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건 오늘 합의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저기, 잠깐만요.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안도걸 위원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간사님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또 뒤로 미루어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타임 스케줄을 정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상대도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부담금이라는 게 사실상 조세하고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뭔고 하니 예를 들어서 특정 집단에 한정해서 부과를 한다라는 거지요. 주로 원인자 부담입니다, 아니면 수혜자 부담. 그리고 그 돈이 특정 용도로 쓰인다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 국민들이 강제징수를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리 절차라든가 심판청구에 대한 대리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여러 부담금 중에서 가장 규모나 크기가 커요. 강력하다고요. 나머지는 이것에 비하면 전부 작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부담금을 허용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보다 국민적인 임팩트가 적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저는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가 필요하고.

간사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까지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일정이 저는 조금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일정은 너무 늦지 않도록, 양당 간사랑 기재부랑 의논해서 자료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될 것 같고요.

천하람 위원님 말씀……

○**천하람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오기형 위원님이나 최은석 위원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요새 AI도 튀어나오고 지금 이라고 있는 와중에 저는 업역을 어떻게 보면 입법을 통해 가지고 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어떤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넣을 때 나머지 부담금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몇 개 추가되고 빠지고 있었겠지만 그때 입법을 할 때 특별하게 이것을 넣자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담금이 그때도 있었고 그중에서 이것만 넣자라는 어떤 판단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

○**천하람 위원** 당연히 그랬겠지요. 부담금이 나머지가 다 신설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이 조항은 1995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다룬다고 그러면 또 결국은 형평성 논란이 들어가게 되는데 행정사분들도 이것 지금 되느니 안 되느니 난리고 그런 것 있잖아요. 행정사분들은 나름대로 아마 행정 관련한 법 과목 이런 것 배우신 것 아닙니까? 시험 과목에도 있을 거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세무사님들 물론 하시지만 조세와 관련된 걸 다루시는 거고 행정심판을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보시거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려면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이게 있으니까 나머지 추가로 또 부담금 비슷한 거 해서 늘리자, 행정심판 대리권을 주자, 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업역 간의 갈등만 더 야기하고 안 좋은 형태로 논의가 흘러가지 않겠나. 저는 우리 조세소위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은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최은석 위원**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이 부담금에 대한 결론을 내자라고 하는 게, 물론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지금 상태가 세무사들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존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세무사들이 다른 부담금으로 이렇게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게 지금 상황이지 기존의 세무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은 저는 간사님들이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이게 이렇게 확장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연구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정해서 그중에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들을 뽑아내 가

지고 여기 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다른 타 전문 자격사들과의 역할이나 업역 충돌 이런 문제로 보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말씀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기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 자료는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시기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서 적절한 시점에, 기재부에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2조가 업역에 관한 거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다음 조항부터는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간단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왕 나왔으니 논의를 한번 다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세에 관한 공시와 진단 이게 또 두 번째 쟁점입니다.

공시와 진단, 여기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사실은 업무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이 법에서, 이 개정안을 통해서 업무 확장은 사실 부담금이었습니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 나머지는 조세에 관한 신고, 공시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실제 공시 업무를 위해서 상증세법에 공익법인 재무제표 공시를 위해서 장부 작성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이 충분치가 않아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명시를 해서 정확히 하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진단 업무도 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전기 공사업, 의약품도매상, 산림사업법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단 업무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런 진단 업무를 직무에 정확히 넣어 주자라는 것으로 저는 의도하고 이 법을 제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진단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들이 다른 단체들에서 있는 건 사실이고요.

세제실장님, 이 진단을 그냥 진단이라고 그러니까 경영진단으로 판단해서 회계사회라든지 경영진단사회에서 반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김영환 의원님 개정안을 보면 조세에 관한 진단이란 말이에요. 앞에 ‘조세에 관한’이라는 한정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뒤의 진단을 경영진단 일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회계사회와 경영진단사회는 이게 일반적인 경영진단이다 이렇게 지금 예단을 하고 주장 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 ‘조세에 관한’이 있으니까 그건 회계사회와 경영진단사회의 과도한

주장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조항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위원님 말씀처럼 또 김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세에 관한 진단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신고서 작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 개인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불분명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진단 업무 자체가 다른 법에서 세무사나 경영지도사가 뭔가 진단을 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그 업종의, 건설업종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할 수 있다,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법에 따라서 세무사든 그 법에서 허용하는 자격사들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은석 위원** 제가 한번……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발언……

없으시니까 최은석 위원님 하시지요.

○**최은석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박성훈 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진단의 의미가 사실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굉장히 커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해 주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 의미와 용어와 관련돼서 현장에서 혼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진단 대상이 앞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명확히 끊어 주지 않고 정리해 주지 않으면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질문인데요.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해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1호로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에 의하면 세무사가 경영진단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정지은** 맞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개별 법에 쭉 열거를 해 놨네요, 보니까 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등등등.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현행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실을 반영한 개정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러 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타 법에서 세무사에 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세무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조에 이 업무를 넣으면 아까 벌칙 조항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격사는 세무사를 등록하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여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전문경영진단기관이 할 수 있는데 이 경영진단기관은 세무사

자격증을 새로 취득하는 사항까지 초래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행법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세에 관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실태를 보고 그 신고를 하기 위한 진단을 한다라는 것 당연한 업무겠지요, 세무사님들의. 그런데 이 규정을 넣느냐 아니냐의 의미는 진단 그 자체를 별도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익을 받는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건설산업에서는 별도의 법에서 여기 이것은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 2조에 넣어 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기업에 대한 진단 업무를, 그 자체를 수임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 진짜 사실 굉장히 혼란이 초래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규정 형식이나 이런 것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최은석 위원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산법상의 재무관리상태 진단 이건 진짜 예외적이고 아까 첫 번째 주제였던 부담금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예외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많고.

조세에 관한 것은 실은 진단이라고 하는, 공시라는 것도 어찌 보면 자본시장법상의 제삼자에 대한 공시와 혼동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진단이란 것도 보면 회계감사나 증명, 감정 이런 것들과 되게 혼돈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렇게 진단이라는 업무를 여기에 포함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조세와 관련해서 세무 의뢰인이 가서 본인의 여러 가지 세무와 관련된 것을 상담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을 들어 주는 것 그게 이미, 세무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구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거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공시와 그다음에 장부 작성 그리고 진단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부분은 100% 회계감사라든지 회계 증명 그다음에 이런 것들과 업무 충돌이 100%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진단이나 공시라고 하는 것들을 넣는 것은 진짜 업역 간의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고 세무사의 본래 업무 범위를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1번 쟁점과 마찬가지로 2번 쟁점도 의견이 완전히 나누어지고 있어서 오늘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빠른 속도로 3번, 4번 쟁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업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쟁점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를 넣자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조에 넣게 되면 배타적 업무가 되고 세무사가 아니면 또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를 들면 2조에 2항을 신설해서 넣는다든지 이럴 수는 없나요, 실장님? 그래 가지고 벌칙 조항에서 2조 2항은, 2조 1항만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지요. 다른 법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업무’ 이렇게 하는 조항들은

기타 조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구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를 구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결국은 부수적인 업무라는 게 저희가 보면 이미 다른 법에서 다 허용을 하고 있는 업무들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다 규정을 함으로써 얻는 실익이라는 것은 세무사의 추가적인 업무 범위 확장의 의미가 아니라면 이미 다른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을 굳이 여기다가, 그러면 결국은 다른 업역에서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신데……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제가 이 규정을 보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상증 세법 보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고용산재보험 보험 사무대행,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 재무관리상태 진단.

그런데 이런 업무가 사실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법 규정으로 보게 되면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세무사의 직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니까 배타적으로,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기술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 전문자격사들 간의 직역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문현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앞에 저희가 논의했던 거와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부분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 차가 1번, 2번과 동일하게 지금 3번도 많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4번 쟁점인 세무대리, 이거를 세무대리라고 꼭 약칭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다른 약칭으로 불러서는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 분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무대리라고 하니까 너무 단순 업무만 세무사가 하는 것 같이 취급받는다는 이런 느낌을 세무사분들이 가지는 것 같아요. 제2조에 정한 직무 이렇게 안 해 주고 왜 우리만 세무대리라고 하느냐, 대리는 사실 변호사도 법률대리를 하는 것인데 거기는 법률대리라고 안 해 놨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발의하신 위원님이시니까.

○**김영환 위원** 첫 번째, 고유 직무라는 것에 저희들이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직무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후에 미래의 어떤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이지 특정해서 이것만이 고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단 업무 하고 있고 아까 부담금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대리라는 것은 신고, 신청, 청구잖아요. 그런데 상담 업무하고 있고요 성실 신고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무들이 다양한데 세무대리로만 딱 한정해 놓은 법은 사실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세무사의 전문성을 축소시키고 본연의 기능들을 사실은 좁히는 것 같아서 제가 세무대리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래서 직무를 결정해 주는 것 이게 제 입법의 의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아까 말씀하실 때 세무대리라는 용어가 9개를 전부 포함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점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다면 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 세무대리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세무 업무라든지 조세 업무라든지 아니면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2조에서 규정한 직무라고 하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바꾸어서 하는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가 때문에 이 법에서 고칠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실장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소위 심사자료 29페이지 두 번째 법률, 공인회계사법을 보면 공인회계사 직무범위의 2호에 세무대리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는 거로 포괄입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세무대리로만 돼 있고 몇 조, 몇 조에 따른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사법을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이 법이 같이 고쳐지지 않으면 법률 간에 혼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여기를 연동해서 ‘세무사법 제2조’라고 해 주면 되지 않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회계사법을 고치면 되는 거지요. 부칙에서 타 법 개정도 할 수 있고 이 법을 따로 개정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우선 판단은 우리가 세무대리라는 용어를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그것부터 판단하는 게 앞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기상 위원** 세무사잖아요. 그러면 세무라는 이 단어가 다른 법에 나올까요? 세무사법 말고 세무라는 단어가, 세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세무사 말고요?

○**최기상 위원** 그냥 세무, 세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에 관한 게 다른 법률 어디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에 있거나 관련한 법률들에 혹시 있는지, 세무라는 것을 뭘로 해석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세무사라고 보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알기로는 세무의 정의가 어떤 다른 세법에 있지는 않고요. 그냥 쓰고 있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하고 관련된 이외에 다른

쪽에서 세무대리라는 말을 쓰냐,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일단 공인회계사법에는 세무대리라는 게 명시적으로 박혀 있는데요. 기타 다른 법률에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하신다면 상임위 간에 협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건 당연하지요.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소송대리 이런 식의 표현을, 법률적으로는 많이 안 쓰더라도 통상적으로 많이 쓰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직무를 소송대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소송에 필요한 상담이나 자료 진단, 해석 이런 거를 다 뺀 그냥 순수한 대리행위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법에도 당연히 필요한 업무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담이나 자료 해석이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보는 게 저는 일반적일 것 같고. 글쎄요, 저도 절대 못 바꾼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통상 세무대리라고 약칭해 온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세무사님들의 업무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표현한다? 글쎄요, 전 변호사와 소송대리, 그렇게까지 그걸 좁게 생각할 일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마지막으로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업역 간 이해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첨예한 부분은, 여하튼 서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변호사라든지 회계사에 대한 직무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춰 주는 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똑같이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과 또 명칭에, 법상의 어떤 명칭에 괴리가 있다면 그것도 또 통일을 시켜 주는 것이 맞는 일이고.

또 그쪽에서 주장하는 걸 제가 하나 귀담아들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 법상에 따르면 세무대리의 경우에는 또 세무사가 정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성실의무라든지 징계 조항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기재되지 않는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 조항으로 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무사가 보다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 전체를 다 커버를 해 주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프로페셔널리즘이 구현이 되고 그게 국민들한테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 명분이 없다면 이건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마지막으로 한마디 짧게 하시지요,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지금 세무사의 직무범위 확대와 관련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데 그동안 보면 세무사의 직무범위 확대와 관련된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고 이 세무대리라

고 하는 것들,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이 세무사들이 본인의 영역에서 다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잘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세무대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축소하고, 그런데 결국은 의도 자체가 보면 오늘 직무범위 확대하는 것들을 전제로 한 세무대리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는 거라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다시 논의되기 전에는 이 부분도 일단은 원안 그대로 좀 살려 놓고,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두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1시간 이상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라고 하는 1번 안건 제2조에 관해서는 당의, 여야를 떠나서 의견들이 얹히기 때문에 합의에까지 이를 만큼 숙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에서 더 연구하는 숙제로 남겨 놓고 2번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44페이지, 2번 세무법인 등 소속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사무소나 세무법인에 사무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고객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직무보조자로 일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강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세무사에게 등록을 의무화시키는 이유는 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세무법인의 지정을 받아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현행법의 취지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직원의 경우에 세무 자격과 관련된 등록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위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좀 있고요. 이렇게 등록하는 과정에 금액이 다 가는 문제가 있을 수,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세무 업무를 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되는데 세무 업무를 하지 않는데 세무법인에 있는 직원 이게 지금 쟁점인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세무대리 업무를 할 때……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세무대리 업무,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않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마지막 파이널 도장을 찍지 않는 서포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세무법인에 일하는 사람 중에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보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법안 개정안의 취

지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 책임으로 세무대리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등록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자기 책임으로 안 하는 사람도 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김영환 위원 아까 우리가 2조 직무를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하는 거는 2조에 따른 직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직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 거지요. 개별 법이나 세무사법에 따른 이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현행법이랑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적용 범위가?

○최은석 위원 아까 그 2조 개정이 없으면 이것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오기형 위원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개정과 상관없이.

○최은석 위원 2조에 따른 직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생각되는데.

○오기형 위원 세무대리 같은데?

○최은석 위원 세무대리는 지금도 세무대리라 한다라고 총칭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이거 2조 개정 우리가 지금 일단 안 하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개념으로는 세무대리인데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이 직원이 하더라도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 법률에서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지금 현행법은 거기서 말하는, 김영환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하신 취지가 2조에 따른 세무대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세금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줬다는 게 아니고 결국 기명날인을 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의 세무대리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게 기명날인 책임을 질, 자기 이름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만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 개정안대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기명날인을 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세무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느냐를 떠나서 그러면 책임을 지는 정도의 기명날인을 하느냐, 그런 업무가 아니더라도 하여간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세무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일단 등록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봤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약간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자기 명의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해서, 종래에 다른 직역에서 멤플랙티스(malpractice)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그로 인해서 고객에게 손해를 입하게 되면 그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에 책임을 질 거냐 아니면 자기가 관여한 업무에만 책임질 거냐, 그런 책임 추궁의 의미가 있을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지가 무엇인가,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할 거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오기형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제 일을 했는데 직접 자기의 명의로 국세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그 경우는 확인이 될 거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어떤 상담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 주고? 그러면 이 고객이 그걸 알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등록을 하라는 취지일 수도 있고. 그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 추궁. 그런 점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걸 안 하고 어떤 또 혀점이 있는지 이런 지점을 좀 더 설명 가능하실지…… 아니면 다른 분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도 어떤 세무법인에서 세무사가, 예를 들자면 2명의 세무사가 있는데 1명의 세무사는 그냥 세무사로서 등록을 해 가지고 기명날인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무사이지만 자기는 그런 책임지기 싫다, 그냥 누군가 일 많은 세무사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냥 계산하라고 하면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행법하에서도 그렇게 세무법인에 속한 세무사가 자기 책임으로 기명날인을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법에 따라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취지는 세무사 자격증은 있지만 단순 보조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니까 등록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읽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거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하라 이런 취지로 읽는다는 뜻이고 아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라는 뜻으로 개정안을 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만약에 김영환 위원님 취지라면 현행법으로도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 팔호 안에, 그러니까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무사무소 또는 세무법인 소속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김영환 위원** 그 말은 세제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법인에 포함돼 있는 세무사가 세무사 아닌 다른 일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세무 관련 업무를 한다는 측면에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 측면이 포함됐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이런 거지요. 카이스트 나온 학생이 있다, IT 전문가인데 너무 똑똑해서 자격증을 여러 개 땠어요. 그중에 세무사도 있는 거라. 그런데 세무사무소, 법인에서 일을 하는데 세무 상담은 안 해 주고 세무를 IT로 발전시키는 업무를 자기가 담당하고 있다, 그 경우에 김영환 의원님 안은 세무사 등록을 하라는 것이고 기존 법은 세무대리 업무는 안 하니 등록 안 해도 된다 이 차이가 나는 건데, 실제로 들어 보니까 젊은 애들 중에는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서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은 세무 업무를 안 해.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도 등록을 하자는 게 김영환 의원님 안이고 기존 안은 그런 사람은 등록 안 해도 돼 이렇게 돼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천하람 위원님, 변호사님 자격으로 빨리 종지부를 찍어 주세요.

○**천하람 위원** 아니, 저는 실태를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김영환 위원님 취지에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무사 자격은 있으시고 그런데 본인 도장은 안 찍는데 상담은 상담대로 다 하시고, 어떻게 보면 실제 세무사처럼 다 활동하는데 등록은 안 돼 있고……

○**김영환 위원** 실제 현장이 그래요.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방금 박수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책임은 피해 가면서 활동은 다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리포팅이 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세무사정계위원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사무직원이 자기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거의 대리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당연히 징계도 받고 하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는 과악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지금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매년 세무사들이 한 500~600명씩 세무사 자격증을 얻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개업을 안하고 어딘가에, 집에서 놀 수도 있지만 어딘가 세무법인에 취직을 해서 등록을 안 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한 30~40%쯤 됩니다. 물론 그분 중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IT 자격증을 갖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변호사 자격증 같은 걸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악은 어렵습니다만 맥시멈 한 30~40%는 그런 잠재적인 대상자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의도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예를 들면 국세청 직원이었요. 세무사 자격증이 이제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일은 안 해요. 컨설팅은 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그분 같으면 조세에 관한 상담이니까 아까 2조의 9개 업무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세무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물론 사실관계를 과악을 해 봐야 되지만 만약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 행위를 했다고…… 국세청이 계속 세무조사를 갔었을 때 기업에 대한 조사도 하지만 이걸 대리한, 세무사들이 적정하게 대리를 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관계를 봤을 때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요.

최은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시지요.

○**최은석 위원** 지금 들어 보면 이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저는 조금 모호한 것 같고, 예를 들면 21대 때도 보면 관세사법에서도 비슷한 게 논의됐는데 이게 규제와 관련된 필요성 때문에 아마 계류됐다고 하고……

제가 보면 제대로 본인의 이름으로 기명날인한다고 아까 실장님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세무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세무사로 등록된 사람을 통해서 세무대리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부통제가 다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등록하는 실익이 많지 않고, 실은 아까 한 30~40% 된다라고 하지만 젊은 직원들이 아마도 연회비 같은 것들이 되게 부담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사협회의 회비로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세무사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또 규제로 작용해서 개인적인 부담으로 또 돌아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세무대리와 관련돼서 누수가 있거나 범죄행위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데이터가 축적되면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는 항상 전원합의체 형태로 운영이 돼 왔는데 합의가 상당히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연구를 좀 더 하고 자료가 축적됐을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세무사법은 사무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세무사뿐 아니라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 탈세 상담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직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결격사유를 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은 사무직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제외한 현행 세무사 결격사유에 준하도록 결격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직업선택의자유 등을 좀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 있는 개정안은 납세자의 신뢰성과 세무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까 논의했듯이 세무대리를 직접 하지 않는 업무 보조자인 사무직원에 대해서 세무사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어느 정도로 완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저희가 관련 유사 입법례를 검토를 해 보았고요. 변호사법, 범무사법, 감정평가사법에서 관련 사무보조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결격사유를 도입을 한다면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중에서 지금 현재 피한정 후견인이라든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또 관련 법 규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고형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저희가 준비는 해 보았습니다. 52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결격사유이고 이것은 세무사의 결격사유 중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결격사유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 같은 경우에는 52페이지에 있고 이것은 변호사법 등을 참조를 해서 개정 내용 중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리고 탄핵·징계처분으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결격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징역형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세무사 결격요건과 동일한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도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제가 아직 수정의견 다꼼꼼하게 본 건 아니지만 좀 줄이자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법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법무사법에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파면되거나 해임된 고위공직자인 경우에 사무직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 둔다라고 하면…… 사실 사무직원의 보수에 한도가 없습니다. 사실상 세무법인에서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사무직원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에는 있는데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뺀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정지은** 이거는 사실 변호사법, 법무사법에는 있는데 감평사법에는 없고 의미를 좀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넣은 부분인데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도 특별히 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케이.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다가 천하람 위원님 의견까지 합친 것으로 규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그리고 관련해서 그러면 경과조치를 지금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렇지요, 소급 배제.

○**소위원장 박수영** 소급 배제는 해야지요, 당연히.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다음, 54쪽 4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사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관계기관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심사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정태호 의원안은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을 전제로 해서 세무사 외의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도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세무사 결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개인정보 결정권 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 입법례로는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정부안 낼 때 세무사 결격사유에 대해서 조회 근거가 지금 없어서 경찰청에서 저희 회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추가가 필요하고 방금 전 논의했듯이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완성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정태호 의원님 안에 있는 문구랑 정부안의 문구를 잠깐 비교를 해 보면, 56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직원이 추가된 것은 저희가 당연히 수용을 하는데 앞부분에 보면 정부안에서는 ‘기재부장관은 등록을 신청한 자’, 신청할 때 당연히 조회해야 되고요. 등록된 세무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정태호 의원님 안에는 그와 관련된 목적 조항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건지 나중에 혹시라도 관계 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합해서 문구를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2개는 병합해서 문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구와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과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홍보를 위한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 표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을 표방하는 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세무사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표시라든지 광고에 대해서만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련 광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 입법례로는 변호사법, 변

리사법 등이 있고 금지되는 광고 유형 및 문안 등을 개정안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 외에 현행법에 따라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국제조세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세무자문사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함께 적용하도록 준용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61페이지 이하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안을 내놨는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당초 안을 받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동의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65페이지, 6번 세무사 보수 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무사의 보수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납세자 등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장대리·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과 같이 다수 납세자와 관련된 세무대리 업무에 관해서 적정 보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성실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세무사의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저가 수임으로 인한 세무서비스 품질 저하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세무대리 비용 증가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기준을 정한 입법례로는 개별 자격사법에서 법무사 보수, 공인중개 보수, 감정평가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세무사의 보수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인데 과거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99년에 이 부분은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폐지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되살릴 경우에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봤지만 새로운 가격 기준을 정부가 설정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이게 됐을 때 아무래도 가격인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소규모 사업자, 예를 들면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세무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될 텐데 이 부분까지 함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반대 입장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원래 이것 다 폐지하자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입장하고,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크거나 또는 특성, 전문성이 있는 부분일수록 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유형화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또 소비자 전반의, 일반적인 요구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특정 인가 가격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무대리에 있어서 그런 가격을 설정하는 게 적정한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정태호 위원님, 발의하신 위원이라서……

○정태호 위원 제가 또 말씀하고 가야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예.

○정태호 위원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세무사들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보수가 너무 낮아짐으로 인해서 세무대리 캘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돼 와 가지고 이것을 표준적인 가격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요. 그런데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줄 가능성은 있다 그 지적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 가격을 협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장치는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줄 정도의 가격 책정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 놨는데…… 여하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논쟁점들은 저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거에 다른 자격사들이 있다가 다들 없어졌고 실은 지금 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판세사 모든 직역들의 구성원들이 아마 다 들어나면서 모든 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무사 관련돼서 이렇게 보수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아마 이게 또 다른 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되게 많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부정적인 의견도 아마……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서비스 요금들이 다 올라갈 가능성 이런 것들로 해서 일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소비자 후생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호 위원님 발의하신 법안인데 현재 의견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호 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왜 두고 있

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무사하고 공인중개사는 왜 아직 있나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도 사실은 정확한 연혁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때 과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리할 때는 말씀하신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이쪽은 보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폐지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99년도에 폐지할 때 폐지 대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공인노무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아마 대표적인 게 공인중개사 보수 기준은 몇 년 전에 국토부에서 엄청 많은 논란 끝에 몇 년의 연구용역하고 업계하고의 대화 끝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논란의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어때요, 정태호 위원님? 합의가 안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이 조항은 다음에 개정하는 걸로 일단……

○**정태호 위원** 다음에 개정하는 걸 약속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7번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의 인적요건 완화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현행 세무법인의 설립과 등록을 위한 인적요건은 사원인 이사 3명을 포함해서 최소 5명의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그 인적요건을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중 정태호 의원님 안은 인적요건을 5인 미만으로 완화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이 완화될 경우 독립 개업이 어려운 젊은 세무사 등의 법인 설립이 용이해져서 세무서비스 다양화 및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옆의 세무법인 현황표를 보시면 2024년도 기준으로 설립된 세무법인이 총 783개 소인데 총 사무소 대비 세무사 수 비율이 평균 1.25명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법인이 다수 분사무소를 두고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대형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무법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인적요건을 5인 미만으로 완화하는 경우에 분사무소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조직적·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주요 자격사 설립 인적요건을 보면 유한회사를 기준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는 7인 이상, 관세사·변리사·법무사가 5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무사가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표에

보듯이 3인의 경우 사례가 없는 사항이라 3인으로 내려갔을 때 전문성과 품질 저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무소별로 흘어져서 1명씩 두는 그런 현상을 감안할 때 만약에 사무소 없이 본점에만 뛸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3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토론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정태호 의원님 안은 토론할 여지가 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간사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납득이 되기는 한데, 아까 세무사들의 직역 확대와 관련해서 저는 세무사들이 기존의 업무보다 자꾸 다른 업무로 확장하려고 하는 게 기존 업무에서의 전문성과 관련된 그런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대형화를 통해서 세무법인의 전문성을 높여야 변호사나 회계사들하고 경쟁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세무사들이 특히 세무 영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측면, 그런 방향으로 세무업계도 같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앞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무법인의 운영 형태가 바뀌어 가야 된다고 보면 오히려 3명으로 낮추는 것은 세무사회나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들이 가야 될 방향과는 조금 반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법인을 유지해 줘야 그게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의 경쟁력 이런 것들도 좀 더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완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강화를 해도 지금 현재의 상황이 5인 이상인데……

○최은석 위원 7명 이상으로 이렇게……

○소위원장 박수영 사무소 대비 1.2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유지를 해도 결국 분소별로 따지면 1명 정도 근무하는 독립채산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성이 높다, 5인 이상 7인 이상 강화해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은석 위원 그래서 분사무소들에 대한 제한을 좀 하면서 오히려 메인 사무소의 인원들이 강화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대안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정태호 의원님 안은 3인 이하로 낮추면서 분사무소는 못 내도록 하는 거니까 오히려 1.25명이라고 하는 평균 숫자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없으시면 최은석 위원님, 정태호 의원님 안은 나름 합리성이 있고 3명으로 하되 분소를 못 두게 하니까 3명이 모여서 근무하게 될 것 아닙니까? 평균을 올리는 효과는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은석 위원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나 회계사들하고 경쟁을 해서, 좀 대형화해서 전문성을 유도하려면 오히려 저는, 정태호 위원

님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강화하면서 분사무소를 못 두게 하는 그런 안으로 조금 더……

○소위원장 박수영 7인으로 하면서 분사무소 못 하게 하자고요?

○최은석 위원 아니요, 7인 하고 분사무소…… 5인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자꾸 세무사들이 개인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세무와 관련된 전문성이 안 쌓이고 그래서 큰 기업에 대한 거나 아주 새로운 세무의 영역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제대로 잘 대응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본업인 세무에서 자꾸 경쟁력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게 저는 지금 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무법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분사무소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집단지성이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강화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3명으로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5명으로 두고 분사무소를 못 두게 하든지 아니면 7명으로 하고 적어도 5명이 주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하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옳은 말씀이신데 1.25명이라는 현실을 보면 너무 이상적으로 7인 이렇게 나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천하람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위원 그런데 1.25명, 그러니까 한 사무소가 굉장히 작은 규모인 게 정태호 의원님 안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 취지도 좋고 저도 공감이 되지만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사무소 위주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분사무소를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5명 모아서 분사무소 하면 되거든요, 1명 1명 해서.

그러면 우리가 3명밖에 없는데 셋이서 뭉쳐서 하나의 본점만 두고, 이런 경우가 저는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자격사들과 다르게 어쨌든 세무사 3명 이상만 모이면 본점에서 이렇게 법인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세무사의 사무실들이 규모가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법령상 보여 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세무사의 업무들도 고도화되고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거를 최소 인원 요건을 줄이는 게 맞는 트렌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세무사회의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세무사회는 별다른 의견 안 냈나요?

○전문위원 정지은 세무사회에서도 동의를 하는 입장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동의를 하는 입장으로 의견을 냈습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예. 내용은 정태호 의원님 안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글쎄요, 정태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정지은 그리고 참고로 관세사법 개정안이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유사한 취지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을 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해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똑같은 내용이네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거는 정부안입니까 아니면 의원님 안입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이인선 의원님 발의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인선 의원님 안입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예.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습니까?

○**오기형 위원** 이거는 흐름의 큰 결정적인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결정해서 실제 입법 채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요구하면 수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실제 전문화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전문성이 담보되는 거고 그 전문성 속에서 그다음 대가로서 겸종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5명으로 하느냐 3명으로 하느냐 그게 절대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5명이냐 3명이냐 그 차이가 어떤 행정적으로 또 다른 소비자 입장에서 무슨 문제 가 있는가를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말씀 속에 그 이야기는 없어서 그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를 갖고 토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최은석 위원** 제가 실은 예전에 소규모 법인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적으면 내부통제가 안 되고 제대로 된 품질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3명으로 낮춰 주게 되면 관세법인도 또 3명으로 낮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어찌 보면 고도화되는, 되게 복잡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거래형태를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게 되는 거지요. 5인 이하, 10인 이하 이런 사무실에 저도 근무해 봤지만 거의 각자 계산으로 일하고 조금 복잡한 사안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자꾸 낮추는 거는 오히려 전체 전문자격사들의 퀄리티를 좀 낮추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우리 중에 제일 전문가는 지금 국세청장으로 가신 임광현 의원님이신데 임광현 청장님의 의원 때 발의하신 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낸 안이라서 제가 조금 저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정태호 위원님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법인 등록의 기준을 사람 숫자로 하는 그 자체가 맞는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대체적으로 법인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지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세무법인도 통폐합이 되면서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앤장처럼 범무법인이.

그래서 이렇게 대형화되면서 퀄리티를 높여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젊은 세무사들이 자유롭게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세무법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시대 흐름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또 갑자기 숫자를 아예 제한이 없는 걸로 해 버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에 가능한 기준을 최대한 완화해 주되 그동안에 분소 내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세무사 쪽의 의견들도 좀 많이 들어 보고 현실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제안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최은석 위원님만 강하게 지금 반대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중립이거나 찬성이거나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최은석 위원님, 이거는 크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석 위원 그거는 아니고 저는 전체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야 될 방향을 놓고 보면 그런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옳으신 말씀인데요, 정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이 셋만 뭉쳐 가지고 우리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평균이 1.25니까 분소 없이 셋만 모여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나중에 M&A를 하더라도.

○최은석 위원 그런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법인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법인이라고 하면 개인보다는 훨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시너지가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나 애로에 대해서 잘, 좋은 솔루션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법인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오인 같은 것들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형화, 전문화라고 하는 것들…… 저는 젊은 세무사들 3명 모여서 할 수 있으면 뭐 한 5명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그거를 낮추게 되면 세무법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주는 사회적인 어떤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더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태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를 혼자 하고 계시는데 최은석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최은석 위원 위원장님께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발의하신 안건이고 또 타당성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속도 좀 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인선 의원님 안도 들어와 있는데 이 취지에 맞게 저희가 좀 조문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조문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자, 8번 안건.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정계 유형 세분화 및 세무사 정계 권한의 한국세무사회에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사 정계 유형에 '2년 이내의 일부 직무정지'를 추가하고 정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먼저 지금

현재 직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서 기존 고객들의 이탈로 폐업에 이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직무정지를 추가할 경우에 위법행위의 경중에 비례하는 징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같이 일괄해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징계 업무의 한국세무사회 위탁과 관련해서 업계의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2019년도 이후에 세무사 징계처분 통계를 보면 총 172건 중 대다수의 징계처분은 세무사회가 아닌 국세청의 징계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징계제도 취지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우선 첫 번째로 일부 정지와 관련돼서는 사실 다른 자격 사와 다르게 세무사의 경우에는 가장대리나 세무조정이나 성실신고 확인 등이 이렇게 똑똑 끊어지는 업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딱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세분화부터 먼저 좀 봐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바로 도입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에 징계를 위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거를 세무사회에서 하는 게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세무사 업무는 공인회계사도 하고 변호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징계 문제가 생겼을 때 국세청에서 만약에 보낼 때 세무사회에서 다 처리하라고 그러면 변호사에 대한 세무 업무와 관련된 징계를 세무사회가 하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재정부하에서 다 일원화하는 것이 형량의 차이라든지 이거를 다 일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건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발의하신 정태호 위원님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의견들이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와 기재부, 정부 측 의견대로 이거는…… 일부 정지도 어렵다는 것이고 그 밖에 세무사회에 위탁도 곤란하다는 것인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8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한국세무사회가 감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 및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현재 회칙에 근거해서 회원으로부터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서류를

받아서 매년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의 실효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기대됩니다.

다만 세무사가 법령에 따라서 작성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 감리할 수 있도록 협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요 입법례를 보면 감리 권한을 민간단체에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하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세무대리의 감리에 대해서는 납세자 개인에 대한 그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성실 대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점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예,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그러면 회계사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회에 감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없습니까, 혹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기업의 재무제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특별한……

○**김영환 위원** 개인에 관한 건 없고.

그러면 회사에 대한 비밀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좀 조정을 한다면 제 의견은 과세관청의 위탁에 의해서 한국세무사회가 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김영환 위원님의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감리를 위탁한다는 말씀은 그래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보기에 결국은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회계사들은 감리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 주셨고 거기는 어떤 기업에 대한 다수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의 그런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게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정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인데, 물론 그것이 한 번 더 검증이 잘 된다면 그 부분에서 나중에 이 서류가 잘 작성이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차적인 기능은 있겠지만 조금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감리라는 게 뭐니까? 감리가 건설공사 이런 데는 감리 이렇게 딱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리는 무엇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다른 데 규정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용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 법에 감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는데 통상 저희가 이해하기로 감리라는 건 건설공사 감리처럼 어떤 설계도에 따라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누군가 제삼자가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을 감리라고 본다면 저희도 그거를 여기서 본다면 세무하고 관련된 어떤 세무사의 신고행위라고 그럴까 신고 대리 행위 자체가 서식이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한 번 더 세무사회로 하여금 체크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독도 아니고 점검도 아니고 감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인회계사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감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공인회계사법에 보면 공인회계사 회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회원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회칙에요? 법은 아니고?

○전문위원 정지은 예, 회칙에 규정하여야 하는 기재사항으로 감리……

○정일영 위원 회칙에 넣어야 된다?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 경우에도 감리를 공인회계사회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공인회계사회에서 회칙에 규정을 하도록……

○정일영 위원 글쎄, 지금 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전문위원 정지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부분은……

○최은석 위원 그중에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정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고 있고요, 공인회계사회에.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공인회계사회 회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회원 업무 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이게 국민 또 기업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는 이 제도가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는 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들이 하는 감리라는 것은 결국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서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 보고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세무사들이 하겠다는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감리는 결국 개인에 대한 세무 자료를 지켜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한 기준에 놓고 공인회계사가 하고 있으니 세무사도 이것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은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

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랑 의견이 같은데요. 회계사회에서 하는 것들은 보면 정확한 회계 기준을 잘 적용했느냐, 제삼자를 위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회계 정보가 잘 표시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 앤드 밸런스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는 업무를 대리한 사람을 또 다른 제삼자가 본다?

저도 가끔 세무사분한테 부탁해서 개인적인 세무 업무를 신고하는데요. 제 개인정보와 제가 왜 이 세금신고를 하는지 이런 데 대한 정보를 전혀 다른 제삼자가 가서 제 개인 세금신고 내역을 감리한다? 이것은 저하고 국세청하고 관계된 문제고 저의 세무대리인이 저를 대신해서 제 세금납부 의무를 국세청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건 법적으로 서로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비교하는 거고 각 개인 세무사가 또 다른 개인의 의뢰를 받아서 그 개인의 세금을 신고해 준 것을 세무사회가 감리한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 침해뿐만이 아니고 되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 같으면 앞으로 세무사분한테 이런 것 맡기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회계사회한테도 이렇게……

○최은석 위원 제 세금 낼 때는 세무사한테 다 의뢰해요.

○김영환 위원 그 회사가 그대로 노출되니까……

○최은석 위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 봤지만……

○김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세무사회 회칙에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탁 근거를 넣는다면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세관청이 위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이 목적 자체가 세무조정이나 성실신고 납부 과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게 샘플입니다. 샘플 감리거든요. 그래서 세무사회 그리고 세무사들의 책임성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사실은 회계사회도 구조는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계속 이상하게 보이는 건데……

○소위원장 박수영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봅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건 다시 한번 정확히…… 혹시 세무 누가 담당하시는 분, 지금 현재 세무사회에서 하고 있는 감리라고 하는 게 조직 감리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각 세무사들이 개인의 의뢰를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납부 내역을 세무사회가 갖고 와서 그걸 다 감리합니까? 이게 사실인가요?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장 김성수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아직 잘 안 됐기는 한데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지우고서 신고내역을 받아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장 김성수**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없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건 100%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샘플로 몇 개만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장 김성수** 그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모르고 계시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현황 파악은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세무사회에서 회칙에 따라서 하는 거하고 또 별도로 법에서 이것을 강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려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하나만 더……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불성실 세무대리 적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무사들의 자체적인 책임성을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예를 들면 성실신고 납부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이런 여부를 다 체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과세관청의 위탁을 받아서 한다면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다, 그게 오히려 납세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최은석 위원** 아니, 저는……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 잠깐,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세무사분들이 작성한 서류를 전부 다 감리는 못 하겠지요, 현재도. 그 많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음’, 아마 협행 규정도 ‘할 수 있음’ 정도로 돼 있겠지요.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고, 샘플링으로 필요한 경우에. 또 개인정보 이런 건 비밀엄수 규정을 여기 넣고 또 현재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개인정보 문제 그런 것은 해결될 것 같고요.

하여튼 회계사 업무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세무사분들이 원칙과 규정에 맞는, 법령에 맞는 세무 업무를 했는지를 한번 감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세무사분들의 세무 업무의 퀄리티 그런 것도 높이고 국민들한테 봉사도 하는 그런 감리 기능이 될 것 같아요. 현재 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정확히 파악을 잘해 보시지요.

○**김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직업에 귀천이 있어, 지금.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완전히 달라.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무사법 18조(설립과 감독)에 일종의 감독 기능으로서 감리를 하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22년도에 귀속분 범인세

감리 건수가 1만 1907건이고 소득세 관련해서는 1만 1714건, 성실신고 관련 1만 1215건. 실제로 하고 있네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정태호 위원 그러면 일종의 감독 기능으로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최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조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는 비밀엄수 조항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1만몇 건 이게 전수는 안 되겠다. 그렇지요? 엄청나게 많을 텐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보통 법인들이 100만 개가 넘으니까 거기서 세무조정을 얼마나 하는지 저희가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 그리고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개인정보를 과연 어떤 식으로 삭제를 하고 하는 것인지, 개인정보 삭제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한번……

○김영환 위원 아니, 미리 파악하고 오셨어야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죄송합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논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법안을 미루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최은석 위원님 하시고 천하람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제가 지금까지 세무사한테 제 개인적인 세금신고를 의뢰할 때 제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 누구한테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고지받은 적 없고, 저는 지금 세무사 회가 하고 있는 이것 위법행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한번 좀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세무사한테 업무 의뢰할 때 제 개인정보가 혹시 세무사회나 이런 다른 데에 전달될 수 있거나, 그게 뭐 가린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그런 엄격한 절차를 지키는지……. 왜냐하면 지금 다 손으로 쓰는 것도 많고, 물론 흠텍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손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샘플링돼 가지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저는 이것 공론화되면 지금 세무사회가 하고 있는 업무가 오히려 불법의 영역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되게 심각한 문제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신고한 과세증명이나 과세신고서가 제 동의를 얻지 않고 법에 근거도 없이 세무사회에 이렇게 전달됐다, 개인정보를 일부 가렸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확인된 바도 없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공론화시켜서 오히려 지금의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것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법에 반영해서 개인의 세금신고 상황을 세무사회가 감리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 저도 이것은 제가 전문자격사의 입장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

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처럼 회칙에서 규정하는 거야 그 내부 회의 일이니까 그거야 그럴 일인데 이걸 법률에서 협회에게 그런 정도의 권한을 준다? 제가 변호사협회 이런 것도 본 적도 있지만 샘플링을 해서, 예를 들면 법률 서면 잘 썼는지 감리를 하겠다? 저는 그것은……

전문자격사라는 게 뭡니까? 다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사람들인데 법에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정보 문제는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마 완벽한 마스킹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독특한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이름이 안 나와도 약간 케이스를 보면 전국에 몇 건 안 되는 그런 유형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법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짧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박성훈 위원** 실장님, 세무사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세무사회 회칙에 있다고……

○**박성훈 위원** 회칙이지요?

○**정태호 위원** 회칙이 아니라 세무사법 18조에 감독 규정이 있어요.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해서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한 것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자료에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성훈 위원** 감독이라는 것은 감리를 포함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지도·감독에 감리까지 포함되는지는 한번 따져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세무사회가 세무사에 대해서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를 저희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18조 자체는 감리의 권한까지를 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자격사단체들이 자기 회원들을 감독하는 그 수준의 법령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통 모든 협회가 보면 회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수준의 감독인 건지 아니면 세무사회를 가지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세무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독인지 이거랑 감리, 감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박성훈 위원** 지금 말로만 감독이라고 하니까 이 감독이 회원에 대한 관리를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결국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인 건지 불분명하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 국민들한테 생중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띠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시는 게 이게 국회의 모습인데, 그랬으면 좋겠다.

○**김영환 위원** 딱 한 가지만……

○**박성훈 위원** 대부분은 성실신고 확인하기 위해서 감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이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김영환 위원 질문만 하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예.

○김영환 위원 기재부는 그러면 세무사회에 감독 권한을 이렇게 법적으로 부여했을 때 감독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감독의 수단들이 뭔지, 법에 만 지금 감독이라고 했지 어떻게 실제 수단들을 통해서 등록된 세무사들을 감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세무사회에 세무사 전체의 질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감독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감독의 수단들이 뭔지, 그러면 그 근거들이 뭔지를 알려 주셔야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최은석 위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도 질문 하나……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이제 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은석 위원님한테 충분한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공방이 되고 논쟁이 된다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할 것 같고 또 정부 측으로서도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무의사결정으로 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기재부도 좀 더 실태 파악하고 나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15분이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다시 속개해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고, 정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10번 항목이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86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등 공공기관과 공익법인은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조사업 위탁사업비 지출 검증 등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함으로써 재정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세무사법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공공기관운영법이나 보조금 관리법 등 개별 법에서 사업비 검증의 목적이나 규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개별 법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감사보

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증과 관련된 내용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 그 주체를 한정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정할 경우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서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정부 측 의견 듣고.

○ 김영환 위원 아니요. 정부 측 의견 필요 없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필요 없다고요? 말씀하세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 김영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미리 논란의 불씨를 제가 없애 버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시간을 절약해 주시는 거예요?

○ 김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철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 최은석 위원 철회하시더라도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하시지 마세요. 철회했는데 뭘 또 한마디 합니까?

전문위원, 11번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지은 90페이지입니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오인 광고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의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취급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도 금지하려는 것으로 선의의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최은석 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정일영 위원 좋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것 통과.

○ 오기형 위원 동의하는 분들이 많네?

○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 게 하나 통과되는구나.

○ 박성훈 위원 동의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곁다리의 곁다리를 동의하시면 됩니까, 진짜?

○ 오기형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

○ 소위원장 박수영 예, 만장일치로.

12번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하람 위원 좋은 분위기에 제가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수영 어느 것…… 11번 안건에 대해서?

○천하람 위원 예, 11번.

○소위원장 박수영 말씀하십시오.

○김영환 위원 좋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김영환 위원 괜찮습니다.

○천하람 위원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게 지금 처벌 규정인 거지요? 해서 보니까 별칙이 처벌 규정이 있고 형사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물론 취지나 목적은 당연히 다 타당한데 이게 요즘 텍스테크라고 하는 세무 플랫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들이 어떤 업무 관련한 광고를 했을 때 좀 위축 효과 같은 것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아마 세무 관련한 플랫폼들이나 테크기업들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광고 규제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약간 혁신이나 이런 어떤 스타트업을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제가 이것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걸 한번 그냥 공유하고자……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다른 법률에도 유사한 규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사법 같은 경우에도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의무에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공인노무사법에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91페이지 하단에 잔뜩 있네.

○천하람 위원 예, 그러면 뭐 저도……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은 이렇게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있는 것들 전부 모아서 한번 우리가 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그냥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12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9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세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세무 업무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매년 3월 3일을 현재 납세자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어서 관련 유사·중복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굳이 이 기념을 하는 날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좀 고민은 되지만 기존에 납세자의 날이 있으면 이 부분에 중복 부분이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지금 납세자의 날이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세무사의 날을 만들어 달라 이것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정태호 위원님 미안한데, 정태호 위원님이 발의했는데 세무의 날이라고 하면 이게 세무사의 날하고 또 다르고 세무의 날 하면 세무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조세하고 관련된다는 느낌도 들고 납세자의 날이 있는데 세무의 날을 정한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저도 이게 지금 납세자의 날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세금 관련돼서 기념도 하고 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표창이나 여러 가지 법정기념일로서 충분히 의미 있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세무의 날로 국가 기념일로 다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굳이 이렇게 지정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호 위원님 어떻게, 반대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정태호 위원 말씀하라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발의하신 위원님이라서 마지막 기회를, 최후진술 말씀하실 마지막 기회……

○정태호 위원 한국세무사회에서 이미 세무사의 날을 이렇게 선포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법으로 만들어 주면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 간에 또 반대의견도 많으시고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3번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관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위반행위 억제의 실효성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2021년도 11월에 해당 법정형이 한번 상향된 바 있고 개정안의 처벌 수준이 세무사법상 가장 중형의 무자격자 세무대리에

준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의 균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이것도 발언 기회 좀 얻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영환 위원** 뿌리 깊은 불신이 여기에서 오가는 것 같아서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 명의 등을 빌려준 자에 더해서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또 그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명의를 빌려준 자와 그 불법성이 다르지 않고 몰수·추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관세사법 심사 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안 심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세무사회 때 다 논의한 거라서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안건.

○**전문위원 정지은** 관련 안건은 다 논의를 하셨고요. 이거는 시행일 부분이고 그것 관련해서 지금 의결된 내용들 중에서 규제 신설 확대와 관련되는 부분이나 하위법령 위임에 필요한 규정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결격 사유 조회 근거 마련이라든지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관세사법, 세무사법 전부 포함해서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것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심의는 다 끝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면 4개의 세무사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이 김영환 의원님 상정 법안인데 김영환 의원님 법안은 계속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계류를 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오늘 논의한 대로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영환 위원** 잠깐만, 부대의견이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제가 좀 발언 기회를……

○**소위원장 박수영** 예, 말씀하시지요.

○**김영환 위원** 부담금 관련해서 조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2002년이었던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2002년 게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24년째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재부의 어떤 학술 연구용역이나 혹은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이 없다는 측면에서 기재부에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정리하는 그런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은 이제 용역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부담금의 필요성,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안건하고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용역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용역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용역도 검토해 보겠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당장 용역비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있는지도 조금……

○**최은석 위원** 저도 잠깐 발언 기회……

○**소위원장 박수영** 예, 마지막 발언 하시지요.

○**최은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결국 기재부가 용역 발주하면 비용이 나가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기존 상태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게 저는…… 전체적으로 부담금에 대해서 조세 성격이 있는 것들은 앞으로 세무사에게 예를 들어서 업무를 좀 확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쓰는 것들은 당연한데 이거는 현재 지금 상태가 문제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오늘 어찌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용역 발주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것 꼭 좀 발언을 남기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개인 세미나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께서, 정부 측에서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3항, 4항 총 3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총 2건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

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 끝났고 의사일정 제2항 김영환 의원님 발의하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과 전문위원실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일 기재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정지은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 ○출석 위원(13인)

김영환 박성훈 박수영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소영 정일영 정태호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지은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 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관세정책관 최재영